35년 무등산 사랑 '무보협'이 쪼개졌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개발·보전 갈등 속 지방선거 앞두고 무등산 정책 촉발되면서 '분화'

무보협과 함께했던 57개 환경·시민단체 탈퇴…무등산시민연대 발족

무등산 보전에 앞장서왔던 광주 환경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갈이 찢기고 있다.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라는 단일 깃발 아래 70여개 환경단체가 30여년 간 한 목소리를 냈는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이견이 터져나오더니 결국 '보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단체 50여곳이 무보협을 탈퇴, 새 단체를 띄운 것이다.

24일 광주시민사회에 따르면 무보협과 함께하던 57개의 광주 환경·시민단체가 최근 무보협을 탈퇴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사)숲살림협회,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천주교 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광주카톨릭농민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국립공원 무등산 지키기 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를 발족시켰다. 새로 출범한 무등산시민연대 공동대표단은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인 상진스님, 장헌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등 7명이 맡았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산악열차·케이블카 개설 등)무등산 접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보다, 정상부 방송통신탑 이전 등 무등산 복원이 우선해야 한다"고 무등산시민연대 창설 배경을 밝혔다.

이날 무등산시민연대 출범에 따라 무보협에는 20개 안팎의 가입단체만 남게됐다. 이마저도 활동이 끊기다시피 한 단체,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있는 단체와 기관이 대부분이다. 한때 무등산 공유화운동 등 무등산 사랑 운동으로 시민 사랑을 받았던 무보협이 빈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다.

무보협은 지난 1987년 5월 22일 출범했다. 넘쳐나는 쓰레기, 모닥불로 인한 크고작은 산불 등 무등산 훼손을 보다 못한 광주시민이 중심이 돼 꾸려졌다. 한때는 광주 78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했고, 회원 수가 1만명에 달했다.

창립 초기 ▲무등산 쓰레기 버리지 말고 주워오기 ▲취사 대신 도시락 휴대하기 ▲계곡에서 세제류 쓰지 않기 등 5대 캠페인을 벌였다. 1990년 말에는 해맞이 자제와 질서유지운동을 펼쳐 이듬해 초 모닥불을 없애는 성과를 냈다.

특히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유명하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늘어난 등산객들이 무등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해지자 등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무돌길'을 조성하고 걷기행사도 열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무보협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는 단체들이 늘어났다. 무등산 훼손 사건을 마냥 두고 보거나 때론 개발 쪽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는 2018년 무등산 자락인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일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수십년생 나무 수십그루가 잘려나가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2020년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졌을때, 광주 26개 환경·시민단체가 무보협과 함께 행동하지 않고, 별도로 비대위를 꾸려 개발 반대 목소리를 낼 때부터 '분화 조짐'이 있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결정타는 무보협이 지난 1월 광주시장 무등산 정책 지지 성명을 낸 것이었다.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무등산 정상부 개발 논의와 관련해 특정 후보 정책 지지를 담은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갈등이 폭발, 환경단체들의 무보협 탈퇴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무등산시민연대 측은 "내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모 후보의 개발 공약에 찬성하는 자료를 냈다"며 무보협 집행부를 겨냥하면서도 무보협 탈퇴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무보협 측은 "당시 성명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던 것이지 개발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탈퇴한 단체들이) 오히려 선거철을 맞아 무등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붕괴 참사 유가족들 지방선거 후보들 무관심 질책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유가족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족이 사고 이후 추모·재발 방지 등 과제에 대해 무관심한 6·1지방선거 후보들을 질책했다.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참사 모두 몇 달 지나지 않았으나, 사후 과제 해결에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관심도는 떨어지고, 지역 정치권도 마치 금기처럼 참사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에 두번의 상처를 준, 두번의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현산 및 유관기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6·1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개발'과 '발전'만 외치지 말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방지책과 사전 대책을 고민해 정책에 반영할 것" "관(官)이 나서서 학동·화정동 재개발조합원, 입주예정자, 인근 상인 등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고 재건하도록 감시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실권을 가진 민주당이 자성의 목소리를 듣고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GGM 공장 신축 현장 사망 관련 안전 소홀 관계자들 금고·벌금형

지난해 8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골 설치 도급업체 직원 이모(36)씨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조모(55)씨와 철골 공사 도급업체 직원 등 4명, 업체 5곳에는 벌금 2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2인 1조 운행이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공정만을 강조하는 관행 때문에 참사가 빚어진 점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우크라에 평화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앞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에 시민단체 반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현산의 요구를 받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준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있는가"라며 "서울시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과징금 처분 결정의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현대산업개발)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법원 판결 2제…교수들이 너무해

학생 인건비 부풀리고 출장비 과다 신청…해임 정당

국립대 교수가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 구입에 유용했다면 대학 측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과학기술원은 2018년 11월 특별감사를 통해 A씨가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참여 비율을 10%에서 50%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타낸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 출장을 갈 때는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차액만 받을 수 있으나 출장비 전액을 신청해 1300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2019년 1월 A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장비를 구입했으며 출장비 부정 취득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목적을 불문하고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등이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학교 측)는 과거 원고의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과 징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허위 초청장·표절 연구계획서로 공무국외여행…벌금형

허위 초청장이나 표절한 연구계획서를 이용해 공무국외여행과 해외 파견 혜택을 누린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교수직에서 해고되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은사이자 이미 은퇴한 미국 한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오고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로 교수 해외 파견 지원 대상자에 선발돼 1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연가를 쓰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1년간의 파견 동안 수업 면제 이익을 얻었다"며 "요구되는 연구를 완성하지도 못해 결국 교육자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4427	1	여수시 동산1길 14 단층 59.82㎡ 부속건물 단층변소 2.08㎡ 제시외 창고 등 15.4㎡	단독주택	106,645,080 106,645,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동산동 296-17 142㎡[현황대및일부도로]	대		
2021타경5673	1	광양시 황길동 730 195㎡	대	60,082,000 60,082,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경계측량요
		광양시 하포1길 7-8 단층41.8㎡ 부속건물 단층축사[현황소재불명]24.48㎡ 단층창고[현황소재불명]14.76㎡ 제시외창고등52.3㎡	단독주택		
2021타경6218	1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67-1 225㎡	대	26,911,020 26,911,0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10-4 단층주택및창고 62.1㎡ 제시외 다용도실 33.4㎡[물건번호1:토지대장상지적재조사지구지정[2021.06.10],경계측량요]	단독주택		
2021타경56923	1	여수시 문수북6길 46-21 단층 76.08㎡ 제시외 다용도실벽체 13.5㎡	단독주택	92,695,080 92,695,080	2021타경56978[병합].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문수동 35-33 138.2㎡	대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5611	1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산472-2 13884㎡[공유자김도훈1/3지분.연고미상분묘소재]	임야	16,660,800 16,660,8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6034	1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94 949㎡	전	12,018,600 12,018,600	연고미상분묘소재
	2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90 1167㎡	전	14,237,400 14,23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55067	1	광양시 태인동 896-165 244㎡	답	47,092,000 47,092,000	
2021타경57049	1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152-4 9719㎡[공유자김재훈6480/9719지분.토지상당부분공유수면으로경계측량요]	임야	8,424,000 8,424,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57186	1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14-17 1210㎡	답	37,510,000 37,5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56688 2021타경57476[중복]	1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46-8 1934㎡	대	3,779,869,400 3,779,869,400	일괄매각.건축법상사용미승인미완공건물임
		동소 546-9 2319㎡	대		
		동소 546-8 관광호텔 1층1713.83㎡ 2층1330.85㎡ 3층1352.88㎡[물건번호1:지상소재컨테이너2동매각제외.유치권주장자있음]	숙박시설		
[기타]					
2021타경6416	1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792-3 1480㎡ 제시외수목 감나무 등 2주	대	301,380,720 301,380,7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관정포함,수목포함,견사제외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1737 단층 138.24㎡ 부속건물 단층창고 330㎡ 제시외 단층창고 등 106.54㎡	사무소		
2021타경6461	1	선적항:여수시 백초항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정남진피싱호 선질:에프.알.피 총톤수:9.77t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 558.000마력 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05년10월12일	선박	68,223,000 68,223,000	보관:여수시국동항[대신선박소개소대표자강대봉010-6328-8959]
2021타경6966	1	선적항:고흥군 동일면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동원호 어선번호:1806011-6467709 선질:에프.알.피 총톤수:1.99t 기관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8년6월12일	선박	90,313,000 90,313,000	보관:여수시남면화태리337-8앞포구[㈜와이제이마린010-2907-3268].제시외의장품및어업허가권포함
2021타경55364	1	선적항:고흥군 동신길 고흥군 도화면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대성호 어선번호:1801004-6467708 선질:에프.알.피 총톤수:1.46t 기관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 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7년12월29일	선박	34,079,000 34,079,000	보관:고흥군사양항[㈜와이제이마린:062-603-1013]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5. 9.[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5. 16.[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